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 비준동의안이 2026년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규정을 신설하고, 아랍에미리트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명칭을 ‘경제부’에서 ‘대외무역부’로 수정하는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4. 15. ~ 4.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재정경제부령 제 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8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아랍에미리트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3.22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

제8조제14항제1호 중 “경제부”를 “대외무역부”로 한다.

제15조제23항 중 “별지 제24호의13서식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4항 중 “제7조제2항제18호”를 “제7조제2항제19호”로, “별표 20의6”을 “별표 20의7”로 한다.

1. 제7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13 서식
2. 제7조제2항제18호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20의6에 규정된 사항이 적힌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별표 20의6을 별표 20의7로 하고, 별표 20의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18.4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 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신 설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0의6]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제15조제23항제2호 관련)

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ty authorization No.....¹⁾)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²⁾ preferential origin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origin of the Korea-UAE CEPA and that the origin criteria met is³⁾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eal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작성방법	인증수출자는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위 문안을 다음과 같이 타자로 치거나, 인장을 찍거나 인쇄하여 작성합니다.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되, 정자로 적습니다. 1) 관세당국에 의하여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2) 원산지를 적습니다. 3) 원산지 기준을 적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① (생략)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7. (생략) <u><신설></u>	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17. (현행과 같음) 18. <u>아랍에미리트로 수출되는</u> <u>물품에 대하여 아랍에미리트</u> <u>와의 협정 제3.22조 및 법 제1</u> <u>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u> <u>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u> <u>서명한 것</u> 19. (현행 제18호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① ~ ⑬ (생략) ⑭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아랍에미리트 <u>경제부</u> 2. (생략) ⑮ (생략)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① ~ ⑬ (현행과 같음) ⑭ ----- ----- -----. 1. ----- ----- <u>대외무</u> <u>역부</u> 2. (현행과 같음) ⑮ (현행과 같음)

제15조(채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① ~ ②② (생 략)	제15조(채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① ~ ②② (현행과 같음)
②③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u>별지 제24호의13서식과</u> 같다.	②③ ----- ----- 다음 각 호와 -----.
<신 설>	1. 제7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u>별지 제24호의13서식</u>
<신 설>	2. 제7조제2항제18호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u>별표 20의6에</u> 규정된 사항이 적힌 해당 물품의 <u>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u>
②④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④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제7조제2항제18호에</u>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u>별표 20의6에</u> 규정된 사항이 적힌 해당 물품의 <u>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u>	2. <u>제7조제2항제19호</u> ----- ----- ----- <u>별표 20의7</u> ----- ----- -----